

□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·가정관련법

동성동본 혼인신고 · 공무원시험 여성가산점

김미경 기자

내년부터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1년간 허용되고 상속세법 중 배우자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가정·여성과 직접 관련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. 미리미리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. 주요 관련 법률내용을 알아본다.

◇ 동성동본부부 혼인신고=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

신고절차는 나와 있지 않다. 하지만 지난 78년과 88년 두차례 실시된 적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준비요령을 알아둘 수 있다. 동성동본 동거부부라고 모두 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.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, 즉 당사자간에 직계혈족이나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, 또한 당사자간에 직계인척,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.

혼인신고서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

△법 시행 당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△법 시행 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 △성년자 2인이 연서한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.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.

또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△호적 및 제적등본 △족보사본 △부모 또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인 성년자의 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.

이들 서류를 내년 1월3일 이후에 구

청이나 읍사무소·면사무소 등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.

◇ 상속세법 중 배우자 상속·증여공제 범위 확대=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기 위해 94년말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라 시행된다. 배우자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액수의 선을 높인 것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의 경우 개정전에는 1억원+(결혼연수×1천2백만원)이었지만 이 액수와 실제 상속가액 10억원 중 높은쪽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.

증여세 배우자 공제는 개정전에는 3

천만원+(결혼연수×3백만원)이었지만 5천만원+(결혼연수×5백만원)으로 상향 조정됐다.

◇ 공무원시험시 여성응시자 가산점제=공무원임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5급,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년도 여성고용목표가 10% 선으로 돼 있어 3~5점의 가산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내년 연초에 공고될 첫 공무원시험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도전해볼만하다.

